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2025. 2.

균형발전본부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균형발전본부

☐ 총 2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시장정비사업의 경직된 실효기준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4조 개정건의	도시정비과
2	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개정건의	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시장정비사업의 경직된 실효기준 완화 (도시정비과, '24.11.27.)	☐ 현황 ○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미인가시 당연 실효 ○ 실효고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다시 승인 신청 불가 ☐ 문제점 ○ (실효기한, 3년)여러사정(조합설립 동의율 확보, 내부갈등 등)으로 인가지연시 당연 실효 되어 사업중단 불가피 ※ 법 제정시보다 실효규정 강화(신청→인가) ○ (재신청기한, 2년) 효력상실 후 소송 등 사유로 실효고시 지연시 2년동안 재추진 불가하여 사업중단 장기화 우려 ☐ 건의내용 ○ (실효기준)정상추진되고 있는 구역의 자동실효기한 확대(인가 → 인가 신청) ○ (유예 신청) 기한확대(30일전 → 실효예정일전) ○ (재추진시기)실효예정일 경과시 자동실효 되므로 재추진 기산일 조정(단축) (실효고시일 → 실효일) ☐ 관련 규정 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	(중소벤처기업부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2.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 선정절차 간소화 (도시정비과, '25.1.13.)	☐ 현황 ○ 시장정비사업시행자를 단독시행에서 공동시행으로 변경은 추진계획 변경승인(중대한 변경) 대상으로,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별도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 이행 ☐ 문제점 ○ 정비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 변경(단독→공동)만인 경우에도 추가동의(60%), 심의 등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(약 6개월) ○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용(조합원 비용부담) 증가 ☐ 건의내용 ○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절차 간소화(약 6개월 단축) - 변경승인(중대한 변경,市) → 경미한 변경(區) ☐ 관련 규정 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	(중소벤처기업부)